

의안
번호

517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17.

전문위원 김동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517호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0. 1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0. 14.

2. 제안이유

-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을 정비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독서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신규 개관: 보문숲길도서관('24. 12. 7. 개관),
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('25. 6. 14. 개관)
- 나. 폐관: 성북이음도서관('24. 7. 1. 폐관)
- 다. 관종 변경(공공도서관→작은도서관): 해오름도서관, 정릉도서관,
월곡꿈그림도서관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8. 28. ~ 2025. 9. 17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도서관법」 전부개정(2022.12.8. 공포, 유예기간 2년, 2024.12.7.까지)에 따라 새로 도입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반영하고, 구립도서관의 신규 개관 및 폐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「도서관법」 전부개정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, 사서 인력 및 시설 규모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월곡꿈그린도서관, 정릉도서관, 해오름도서관 3개소를 공공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관종을 변경한 것임.
-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개관한 보문숲길도서관과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를 조례에 반영하여 구립도서관 현황을 현행화한 것이며,
- 성북이음도서관은 보문·삼선 생활권역 내 신규 도서관 2개소 개관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을 해소하고,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폐관함에 따라 해당 도서관을 조례상 도서관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것임.

〈안 별표1 개정사유〉

구분	도서관명	개정사유
신규 개관	보문숲길도서관	`24. 12. 7. 개관
	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	`25. 6. 14. 개관
폐관	성북이음도서관	`24. 7. 1. 폐관
관종 변경 (공공도서관 → 작은도서관)	월곡꿈그림도서관 정릉도서관 해오름도서관	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으로, 사서와 시설 규모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도서관의 관종을 변경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「도서관법」 1) 전부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에 맞추어 구립도서관의 관종을 정비하고, 신규 개관 및 폐관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1) 「도서관법」 제36조(등록 등)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(이하 "설립자"라 한다)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,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·도지사나 시·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등록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을 변경(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나 시·도교육감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나 시·도교육감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,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28조(공공도서관의 등록 등)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도교육감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.

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도교육감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등록관청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.

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"이란 도서관 면적(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.

□ 참고자료

〈공공도서관 등록요건 서울시 기준〉

구분	사서	시설(서비스 면적)	자료
공공도서관	5명 + 면적에 따라 증가	330㎡ ~	30,000점
(공립)작은도서관	1명	33㎡ ~	1,000점

〈성북구 도서관별 등록요건 현황〉

연 번	도서관명	사서		시설		자료		총 여부	비고
		요건	현황	요건	현황	요건	현황		
1	성북정보	10	12	330	2,255	30,000	206,924	충족	
2	아리랑	7	11	330	1,271	30,000	126,578	충족	
3	종암동새날	5	5	330	379	30,000	83,956	충족	
4	석관동미리내	5	5	330	361	30,000	71,132	충족	
5	달빛마루	6	6	330	737	30,000	96,956	충족	
6	청수	5	6	330	417	30,000	78,113	충족	
7	아리랑어린이	5	5	330	625	30,000	72,008	충족	
8	장위행복누림	5	5	330	338	30,000	52,125	충족	
9	성북길빛	6	8	330	935	30,000	73,820	충족	
10	글빛	6	6	330	799	30,000	58,569	충족	
11	보문숲길	5	5	330	370	30,000	47,623	충족	신규개관
12	성북 어린이청소년	6	7	330	828	30,000	54,388	충족	신규개관
13	월곡꿈그림	5	2	330	292	30,000	20,437	미충족	관종변경
14	정릉도서관	5	2	330	225	30,000	34,782	미충족	관종변경
15	해오름도서관	5	3	330	260	30,000	31,985	미충족	관종변경
16	오동숲속	1	2	33	431	1,000	44,121	충족	작은도서관
17	서경로꿈마루	1	1	33	125	1,000	47,350	충족	작은도서관